

광시면행정복지센터 정기감사 결과보고

《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2019. 10. 30.(수) ~ 11. 1.(금)(3일간)
- 감사반 : 7명(감사팀장외 6명)
- 감사범위 : 2017. 10월 이후 면정업무 전반
- 중점감사내용
 - 세출, 물품관리, 각종 공사 적법처리 여부
 - 복지, 농·축산업, 산업분야 등 대민업무 추진사항 등

■ 감사결과

(단위 : 건, 천원)

일련 번호	소 관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기타	계	지급	회수	부과
계		19건	19	11	8		3,536	133	1,452	1,951
1	총무팀	급량비 지출 부적정	1	1			40		40	
2	총무팀	일직 근무 시간 미준수	1		1					
3	총무팀	회계관직 공무원 직무대리 미지정	1		1					
4	총무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1					
5	총무팀	직무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1	1			244	133	111	
6	총무팀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1	1			175		175	
7	총무팀	일상감사 미이행	1		1					
8	총무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1	1			728		728	
9	총무팀	건설공사 감독업무 및 대가지급 소홀	1	1			398		398	
10	총무팀	건설공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부적정	1	1						
11	맞춤형 복지팀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업무추진 소홀	1		1					
12	맞춤형 복지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업무 소홀	1	1						
13	맞춤형 복지팀	복지카드 등의 회수 및 폐기업무 소홀	1	1						
14	맞춤형 복지팀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1	1			1,924			1,924
15	맞춤형 복지팀	도로점용허가(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관리 소홀	1	1			27			27
16	산업팀	산불 진화용 장비 관리 소홀	1	1						
17	산업팀	2018년 토양개량제 살포 현장 점검 및 공동살포 조사 업무 소홀	1		1					
18	산업팀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 업무 소홀	1		1					
19	산업팀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 운영 업무 소홀	1		1					

□ 주요지적사례

■ 급량비 지출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초과근무실태 자체점검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통보」(총무과-22456, 2016.08.17.)호에 따라 초과근무자의 급식 시 2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에 한해 급식이 가능하며 관외 출장자에게는 급식 실시가 불가하게 되어 있다.
- 광시면에서는 총 5건의 2시간미만 근무자에게 급식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 한 사실이 있다.

■ 일직 근무 시간 미준수

-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외 3시간을 근무 후 귀가 근무자로 되어 있다.
- 광시면에서는 일직 근무자가 일직근무시간인 09:00 ~ 12:00을 미준수 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 회계관직 공무원 직무대리 미지정

-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항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다.
- 광시면에서는 회계관직 공무원이 휴가 등으로 업무를 못하는 중에도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별표1]에 열거된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 광시면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격려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직무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광시면에서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신분변동 대상자들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초과하여 과다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

■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제1항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의하면 각종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공급 가액의 2.5%,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 공급가액의 1.5%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광시면에서는 총 4건의 공사 및 용역 계약 건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미 매입하거나 기준 이하의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한 사실이 있다.

■ 일상감사 미이행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예산군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일상감사는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실시하며 집행부서의 장은 계약업무의 경우 물품 제조·구매는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감사 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광시면에서는 2건의 계약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집행 전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업무의 적법·타당성 점검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하면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광시면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건설공사 감독업무 및 대가지급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표지의 게시 비용을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6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의 주 출입도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광시면에서는 6건의 공사에서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안내표지판 설치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건설공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한 공종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광시면에서는 3건의 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으면서 수급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적정하게 정한 사실이 있다.

■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업무추진 소홀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하면 저소득 단독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읍면동장은 통·반장·이장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광시면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을 미 수립하는 등 혼자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이며,
-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 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시면에서는 사망한 4명의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회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복지카드 등의 회수 및 폐기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해당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광시면에서는 7명의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복지카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10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며
- 농업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광시면에서는 취득세를 경감 받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데도 경감된 세액을 부과등록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 도로점용허가(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관리 소홀

-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 제2항에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광시면에서는 3건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허가사항을 세무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등록면허세 부과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 산불 진화용 장비 관리 소홀

- 산림축산과-34208(2017. 11. 30.)호와 관련하여 산불진화용 장비를 배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 광시면에서는 산불진화장비 대장을 미 비치하고 산불진화장비 점검 및 사후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 산불예방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018년 토양개량제 살포 현장 점검 및 공동살포 조사 업무 소홀

- 농정유통과-7982(2018. 5. 3.)호와 관련 토양개량제 적기 살포 및 미 살포 방지를 위하여 현장 조사 계획을 수립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현황을 제출해야 함에도
- 광시면에서는 자체 점검 계획 미 수립했으며 현장을 점검하고 작성하는 결과보고서를 미 작성하는 등 정확한 토양개량제 미 살포 현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공문을 제출해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 PLS전면시행 대홍 홍보물(리플릿, 전단지, 플랜카드) 배부 업무 소홀

- 산림축산과-15318(2019.4.23.)호로 2019.1.1.부터 전면 시행된 PLS(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와 관련해 공문서를 시행하여 각 이장 등을 통해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음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함에도
- 광시면에서는 공문서를 시행하지 않는 등 홍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 운영 업무 소홀

- 농정유통과-6899(2018.4.16.)호와 관련 2018년 농촌일손돕기 추진계획 알림 업무에 대하여 연간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희망농가에 수시로 일손돕기를 지원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농업인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 광시면에서는 마을 이장,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공문서를 시행하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